업 무 연 락

제 2013 - 72호

시행일자 : 2013. 10. 29.

수 신 : 전 조합원사 및 전국매립협의회 회원사 대표이사 [대표이사 메일 송부 병행문서]

참 조 : 환경관리 팀장

제 목 : 「소각·매립 부담금 제도 도입」 관련 홍영표 국회의원 국정감사 시 정책제언 알림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'13.10.28(월)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「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」 제정(안)과 관련하여, 소각·매립 부담금 제도 도입 시 폐기물 재활용 전환효과 미미, 정부 재원마련을 위한 정책적 수단 활용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, 수도권매립지를 대상으로 부분적 도입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, 홍영표 의원은 동 문제 지적에 대한 근거자료로 「소각·매립 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」 정책보고서를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**「소각·매립 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」 정책보고서 주요내용**

- 국내 폐기물의 소각·매립 처분 비율이 15%에 불과하므로 소각·매립부담금 제도의 정책효과 불투명

-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지 않은 우선적 제도 도입은 산업계의 불안과 반발에 따라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방해
- 따라서, 정밀한 실증분석을 통해 동 부담금 도입이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와 범위 결정이 필요
-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매립부담금 제도 도입의 효과가 기대되므로 수도권매립지를 대상으로 한 부분적 제도 도입 방안 검토 필요

붙 임 : 「소각·매립 부담금 제도」 도입에 대한 정책자료집 발간 보도자료 1부. 끝.

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이사장

담 당	정동현	팀 장	김두섭	사무국장	장기석	상근부이사장	신총식	이사장	김영중

협조자

시행 한공조 2013 - 72호 (2013. 10. 29) 접수

우 157-75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66 11층(등촌동, 우리벤처타운) / www.kiwrma.or.kr

전화 02-718-7900 전송 02-718-7171 / kiwrma@kiwrma.or.kr /비공개

www.dreamyp.or.kr

보 도 자 료

2013. 10. 28. (월)

인천 부평(을) 국회의원 홍 영 표

민주당

▷국회의원회관 527호 Tel.784-3143 Fax.788-0391 ▷조남혁비서관 (010-4761-1814)

【2013. 10. 28. /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정감사】

소각·매립 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
정책자료집 III권 발간

□ 민주당 홍영표(인천 부평을, 환경노동위원회)의원은 10월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「소각 · 매립 부담금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」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.

□ 홍영표의원은 "소각·매립의 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, 정책적 수단으로 소각·매립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" 고 밝혔다.

홍의원은 "소각·매립 부담금 제도가 소각·매립되는 폐기물을 재활용으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정부 및 지자체의 재원마련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" 며 "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매립 부담금 제도 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를 대상으로 매립부담금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" 고 주장했다.

[정책보고서 주요내용]

- 지난 7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『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률안』 및 환경부가 지난 9월 입법예고한 『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안』에서 폐기물 처분부담금 제도(일명 소각·매립부담금 제도)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음.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『자원순환 사회전환 촉진법』 제정과 매립부담금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.

- 이에따라 소각·매립 부담금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내외 사례 및 여건을 분석하고 제도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.

- 소각·매립량을 줄여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동의하며,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. 그렇지만, 국내 폐기물의 처분비율(소각·매립)이 15%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각·매립부담금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시 기대하는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임.

- 소각·매립부담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지역과 필요한 폐기물이 있는 반면 제도도입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폐기물도 있음.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소각·매립부담금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산업계의 불안과 반발을 야기하여 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방해할 것임.

- 따라서 국내에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되는 구체적인 실태에 대한 정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소각·매립부담금 도입이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.

-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반입과 관련하여 매립부담금 제도 도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를 대상으로 매립부담금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
※ 참고로 홍영표의원은 지난 5월 13일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반입부담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한 「수도권매립지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을 대표발의함